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정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729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5월 16일

발 의 자: 유정희 의원(1명)

찬 성 자: 강동길, 곽향기, 김 경, 김규남, 김성준, 김영철, 김원중, 김춘곤, 남창진, 문성호, 박승진, 박철성,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유정인, 이영실, 이원형, 이종태, 임규호, 임종국, 전병주, 최민규, 한 신, 홍국표 의원(25명)

1. 제안이유

-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에 따라 장애 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에 종사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행계획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2호의2 신설).
- 나.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예술인지원법」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시장은 「장애예술인지원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